

얼마 전 시에서 진행하는 아이디어 공모전 참여를 위해 공모전 담당자 앞으로 메일을 보냈는데, 이상하게 며칠이 지나도 수신확인이 되지 않았습니다. 몇 주가 지나도 마찬가지길래, 답답한 마음에 직접 연락을 시도했더니 의외로 확인하셨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문득 궁금증이 생겨, 관련하여 글을 좀 찾아봤습니다. 블로그 글 두 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공직자통합메일을 비롯한 대부분의 메일시스템은 수신자가 메일을 열람하는 경우 자동으로 수신자의 PC 에서 발신자 메일서버로 수신확인 정보를 보내게 되고 발신자 메일서버는 이 때 비로소 "수신확인"으로 표시하게 됩니다.

따라서 발신자 메일서버가 수신확인 정보를 받으려면 수신자 PC 에서 발신자 메일서버로 수 신확인 정보를 보낼 수 있어야 하는데 수신자 해당 기관에서 직원들이 상용메일 (다음, 네 이버 등)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접속을 차단하여 발생하는 문제로 생각됩니다.

만약 수신자가 기관내가 아닌 외부에서 메일을 열람하였다면 수신확인이 가능할 것입니다.

위와 같이 귀하께서 수신확인이 안되는 이유는 해당 기관에서 상용메일을 차단함으로써 발생하는 문제로 해당 기관 정보화부서로 문의하시면 좀더 정확한 내용을 알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즉 보안 차원에서 공무원 PC에서 상용 메일 웹사이트가 차단되어 있어서, 수신 확인 정보를 보낼 수 없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korea.kr를 사용하는 공공기관을 비롯하여 일부 사기업의 메일시스템은 보안상의 이유로 텍스트 본문이외에 HTML 소스에 삽입된 각종 파일이 자동으로 열리지 않도록 차단하기 때문입니다. Outlook 등의 일부 메일프로그램에서도 파일이 차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img src=http://발송메일서버/../blank.png》라는 소스가 포함되어 B사용자에게 전달되었지만, B메일시스템에서 blank.png 파일이 열리지 않기 때문에 B사용자가 받은 메일의 본문에는 다음과 같이 'X' 형태의 그림과 같은 '파일 없음'으로 표시됩니다.

A메일시스템은 blank.png가 B메일시스템에서 호출되지 않았으므로 이미지 파일의 호출시각, 즉 수 신확인시간을 표시해 줄 수가 없습니다. 텍스트가 읽혔더라도 이미지는 읽히지 않았기 때문에 메일을 읽지 않은 상태로 판단하는 것이지요.

요컨대 메일을 열람했더라도 보낸 사람에게는 **반드시 수신확인으로 표시되지 않은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https://blog.naver.com/chjeon/222279931572

NAVER WORKS 헬프센터 글도 한 번 보겠습니다.

메일의 수신 확인 기능은 메일을 통해 보낸 메일에 포함되는 숨겨진 이미지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메일에서 메일을 작성하여 보내는 경우 메일임을 알 수 있는 이미지가 포함되며, 포함된 이미지의 URL이 호 출되면 메일을 받으신 분이 메일을 확인한 것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다만, 아래 같은 경우에는 수신확인 기능이 제한되거나 정확하지 않은 정보를 제공할 수도 있으니 이용에 참고 부탁드립니다.

# - 일부 메일 서비스에서 보안상의 이유로 이미지를 자동 차단하는 경우

일부 메일 서비스 업체에서는 보안상 이러한 이미지를 자동 차단하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메일을 받은 분께서 메일을 확인하셨다고 하더라도 '수신확인'에 '읽지않음'으로 표시될 수 있습니다. 또한, 보내신 메일을 받는 서버에서 메일에 포함된 이미지의 URL을 호출해주지 않고 잘라 버리거나 메일을 받은 분이 받은 메일을 개인 메일함으로 이동시키는 과정에서 URL이 호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메일을 받은 분이 메일을 확인했더라도 '수신확인'에 '읽지않음'으로 표시되거나 확인하지 않았는데도 '수신확인'에 확인한 날짜가 표시될 수 있습니다.

#### - POP3/SMTP에서 메일을 보내신 경우

POP3/SMTP를 이용하여 타 메일 혹은 다른 프로그램에서 메일을 작성하여 보내신 경우, 해당 메일은 수신확인 목록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 - TEXT 모드로 메일을 보내신 경우

메일 작성 시 에디터 모드(HTMLEditor)가 아니라 텍스트 모드(TEXT)로 작성하여 메일을 보내신 경우, 해당 메일은 수신확인이 되지 않습니다.

텍스트 형태로 메일을 작성하게 되면 위에서 설명드린 특정 이미지를 링크할 수 없어 수신확인을 할 수 없으므로, 수신확인 목록에 다음과 같이 '확인불가'로 표시됩니다.

## - '받은 메일 이미지 안 보기'로 설정한 경우

메일을 받는 분이 환경 설정 옵션을 통해 '받은 메일 이미지 안 보기'로 설정해 두신 경우 메일 내에 이미지 URL이 호출되지 않아 수신확인이 되지 않습니다.

메일을 발송한 곳이 네이버웍스 메일이 아닌 외부 메일이라면 위에서 설명드린 유형들에 대해 자체 확인할 수 없는 관계로 정확한 확인이 어려울 수도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https://works.do/FzQSXM

공공기관 정보화 부서에 연락하여 확인해 보는 것이 가장 정확하겠으나, 이렇게 세 줄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 1. 수신자가 메일을 읽으며 수신확인 관련 이미지를 호출하면, 발신자는 이를 통해 수신확인 여부 및 시간을 확인할 수 있다.
- 2. 공공기관 및 일부 업체는 보안상의 이유로 수신 확인에 필요한 이미지 열람이 차단되어 있다.
- 3. 이미지가 차단되면 이미지를 호출하지 않으니, 발신자는 수신확인 여부를 알 수 없다.

호기심에 회사별로 받은 메일들 몇 개 확인해 보니, 수신확인 관련 이미지로 보이는 파일들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URL 형식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네이버 비즈니스 스쿨, 네이버 웹둔, 네이버 엑스퍼트, 네이버페이, 네이버톡톡: cos2.navercorp.com/received/{} 카카오페이지, 카카오비즈니스, 카카오페이: ems-

counter.mail.daum.net/emscount/v1/mails/{}/events/open

11번가: track.ems.11st.co.kr/{}

또 하나 궁금증이 생깁니다. 공공기관에서 이러한 불편함은 언제부터 시작했을까요? 전북일보의 한 기사를 통해 알수 있었습니다.

## 공직자 통합 이메일 '속 터지네'

시행 1년이 갓 지난 공직자 통합 이메일에 대한 개선을 촉구하는 여론이 …

www.jjan.kr

부안지역 행정기관 등 각 공공기관 근무자들에 따르면 이메일 (e-mail)통합규정에 관한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대통령 훈련 제 141호)에 따라 네이버·다음 등 상용메일 서비스를 차 단한 공직자 통합 이메일(ID@korea.kr)제도가 지난해 10 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중략)

네이버 및 다음 등 상용메일과 달리 정부통합 메일로 보낸 메일의 수신 확인이 불가능해 수신자에게 확인 연락을 해야 하며 송신된 메일도 즉시 알림서비스 기능이 미비한 점도 불편을 가중하고 있다는 것이다.

(하략)

https://www.jjan.kr/article/20091006328222

2008년 10월 1일부터 시행된 제도로 보입니다. 그나저나 수신 확인은 직접 구현해 봐도 재미있을 것 같네요. 실제로 조금만 검색해도 관련 코드가 나오더라고요. 다만 가짜 개발자인 저는 귀찮아서 대강 원리 파악한 것으로 만족하겠습니다.